

제256회 국회(정기회)
서면답변서

2005. 10. 6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256회국회(정기회)
2005.10. 6

200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 정 감 사

서면답변현황

(행정 자 치 부)

서면질의·서면답변	구두질의·서면답변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	
권오을 의원(한 나라 당)	
김무성 의원(한 나라 당)	
유기준 의원(한 나라 당)	
유정복 의원(한 나라 당)	
이재창 의원(한 나라 당)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	
정진석 의원(무 소 속)	

- 목 차 -

□ 강창일 의원님	1
□ 노현송 의원님	4
□ 박기춘 의원님	17
□ 심재덕 의원님	19
□ 양형일 의원님	31
□ 우제항 의원님	34
□ 원혜영 의원님	42
□ 유인태 의원님	45
□ 홍미영 의원님	47
□ 권오을 의원님	58
□ 김무성 의원님	60
□ 유기준 의원님	61
□ 유정복 의원님	65
□ 이재창 의원님	76
□ 이영순 의원님	79
□ 정진석 의원님	82

강 창 일 의원님

(법의학과장 최영식)

현재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에 대하여

- 변사체에 대하여 국가가 검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제도 및 그 제도를 운용할 인원 및 조직이 있어야 되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합니다.

변사체의 사인규명 및 사망의 종류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의 변사체 발생보고 및 검사의 변사체 처리 지휘에 의거하여 주어진 조건하에서 수동적인 부검업무에 국한하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변사체에 대한 부검결정권이 없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재가 크나 큰 문제점입니다.

해결 방향으로는 검시조사와 부검의 통합적 운영, 전문

가 양성, 신속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법의관을 두고 법의관 사무소(가칭)를 설치 운영하게 하거나 중앙 정부에서 임명 또는 민선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 직속 하에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의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검시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는 법의학자를 배양할 토양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단기간 법의학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하면서 확실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때만 검시관 양성 및 검시관 제도의 도입 문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강 창 일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은 당연함. 소장의 생각은?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범죄수사와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의 독립성과 신뢰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외국 사례

- 미국 : 주정부 경찰법과학연구소, FBI 법과학연구소
- 일본 : 경찰청 부설 과학경찰연구소
- 영국 : 경시청 소속 법과학연구소

노현송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 현행 국과수의 교육일정으로는 현장적응 및 실습은 고사하고 이론습득조차 벅찬 일정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무엇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 감정불가 건수를 줄이고 수사관에 의한 DNA훼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학수사요원에 대해 실습장이나 현장 교육 위주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과학수사기법의 변화와 발전추세에 따라 과학수사요원들이 실제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수사과정에서 감정물채취 및 취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 바,
- 제도적 미비로 인해 현행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수사보안연구소 및 경찰종합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중 일부 일정을 배정 위탁교육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

후 국과수의 교육기관제도화 추진, 교육시설 확보 및 과학수사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 있는 교육 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노 현 송 의원님

(화학분석과장 김은호)

혈중알콜농도 검사 등 더 많은 부분을 경찰이
처리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요원에 대한 교육과
장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의 의견은?

- 혈중알콜농도 감정은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동시에 분석 결과는 피의자의 사회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입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 연구소에서는 시험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하여 감정인 숙련도 시험 (CTS) 등에 응시하여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있으며, 국제공인시험소 인정(KOLAS)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 연구소에서는 단순 음주운전 여부뿐만이 아니라 음

주에 의한 교통사고, 선박 사고, 작업장 안전사고, 음주 후 폭행 및 살인 등 수사 전반에 걸쳐 알콜농도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신선한 혈액뿐만이 아니라 부패 혹은 응고된 혈액, 장기 조직 등에서 알콜농도를 감정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 연구소에서는 혈중알콜농도 감정 이외에도 혈액형, DNA, 약독물, 미세증거물 등에 대한 감정도 아울러 수행하여 사고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만 별개 기관에서 감정할 경우 수사 및 감정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분석 장비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감정 기법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분석 기법을 새로이 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은 화학에 대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각 지방청 혹은 지역 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제를 받는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콜농도 감정 전담 부서를 설치 운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선 경찰관에게 올바른 채혈 및 혈액 송부 요령 등에 대하여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 현 송 의원님

(화학분석과장, 김은호)

○국적, 출처, 시기를 묻는 감정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위원소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또한 환경관련물질의 신속, 정확한 감정기법 개발, 배출원 추적 시스템 개발 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 및 대책은?

○ 동위원소 분석기술의 응용은 식품, 한약재 및 약품류의 원산지 추적, 교통사고에서 자동차페인트, 유류, 유해물질, 폐수, 폐기물의 배출원추적, 방화사건 등 법과학적으로 널리 응용될 수 있는 분석기술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송아지의 지리적 원산지를 추적하고, 유럽연합에서는 포도주의 지리적 원산지 추적 그리고 영국의 경우 폭발물에 대한 이동식별 등 세계적으로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2004년 원광대학교와 연구용역을 맺어 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충남대학교와 도의원소 및 미량원소 분석법의 법과학적 응용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 이러한 분석기법을 감정에 활용하고자 동위원소 질량분석기 및 레이저유도결합프라즈마 질량분석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고도의 분석기법이 요구되므로 화학을 전공한 연구관 1명이 현재 오스트리아 연구센터(Seibersdorf research)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위원소를 이용한 분석기법을 범죄수사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범죄는 범죄주체의 파악이 어렵고, 범죄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으므로 사업체별 환경오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환경범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2005년도에 경기대학교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여 오염원 추적을 통한 환경 범죄 감정 및

수사 기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사건·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담인력 및 고성능 장비를 갖춘 전담부서의 설치가 요구됩니다.

노 현 송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효율적인 범죄수사와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 이관이 바람직함. 소장의 의견은?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범죄수사와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의 독립성과 신뢰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 현 송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감정의 독립성과 신뢰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대책은?

- 감정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기 위한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KOLAS)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는 부장, 과장, 해당담당으로 구성된 심사합의제에 회부하도록 하고, 심사합의제는 전원일치에 의한 완전협의제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 DNA 및 마약분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04. 8.27)
- 현재, 혈중알콜 및 약독물 분야 감정인증사업 추진중

노 현 송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경찰청 이관 반대 논리는 감정의 신뢰도임. 감정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독립성이 보장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음. 소장의 견해와 대책은?

- '감정결과의 공정성'을 성과관리의 주요 항목으로 지정하면 신뢰도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KOLAS)'과 '심사합의제 제도'를 병행하는 등, 감정결과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습니다.

노 현 송 의원님

(법의학과장 최영식)

- 법의관의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노력은?
- 보건연구원, 연구사 및 의료기술의 인력의 증원에 대한 견해?
- 교통사고의 경우 부검시 시체와 차량을 함께 조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검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법의관 처우개선을 위하여 03' 년도에 임상연구비를 증액(495,000원에서 655,000원)하였으며 04' 년도 에는 부검에 종사하는 법의관에게 의료업무수당 2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직제개정시 의무사무관에서 기술서기관으로 직급상향을 조정하는 등 법의관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의관의 과도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관, 연구사 및 의료기술직의 인원의 증원이 절실히 필요 할 것

이라 사료됩니다.

- 교통사고와 관련한 부검시 현재에도 필요시 교통공학 분야의 감정인 참여를 요청하여 관련 증거물 및 시체에서의 과학적인 증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검이후에도 부검소견 및 부검사진 등을 공유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 기 춘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소속기관 이전 내지는 기구개편과 관련한 연구소의
입장은?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범죄수사와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의 독립성과 신뢰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연구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타 책임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우수 운영사례를 수집 중에 있으며, 기구 개편 등 책임운영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 기 춘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면수)

유전자 전문검사기관으로 국과수가 지정되어 미아에 대한 유전자 검사 및 유전자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 계획은?

- 국과수는 「실종아동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6조에 유전자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미아에 대한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관리 업무 전담조직과 인력을 시행령 발효시기('05년 12월1일)에 맞춰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요구코자 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심 재 덕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국과수 인원과 업무량을 비교할 때 부족한 인원 및
연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 정확한 인원 산출을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건수 이외에도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업무량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올해 우리 연구소에서 2006년도 소요정원 파악을 위해 분야별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한 자체분석을 실시한 결과 14명 정도의 정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현원 기준으로 50명 추가소요(결원인력 36명 감안)

- 정원 증원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연차적으로 정원증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006년도 소요정원 내역

구분	요구내용	요구사유	과명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 원 : 14인 증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의무4급1, 연구관5, 연구사4, 별정6급1, 기능10급2, 경감1 ○ 기 구 : 1과(법의감시과) 신설 <li style="padding-left: 20px;">- 현장검시 기능 강화 		
1	1인 감정정보시스템 및 과학수사DB구축 전담인력 보강 - 연구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물에 대한 감정업무처리는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을 구축하여 운영중 <li style="padding-left: 20px;">- 감정의뢰서의 접수, 발송업무 처리 및 시스템운영 등을 위해 담당신설 필요 ○ 각종 감정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과학수사 정보화 추진 등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총무과
2	1인 영상분석 감정인력 보강 - 연구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원 시뮬레이션 및 사진감정 등 신기술 감정업무 수행 인력 필요 ○ CCTV 및 동영상 조작 감정시 매체의 다변화 및 기술발전으로 감정소요 시간 대폭 증가로 인한 인력 부족(연 400% 정도 증가) 	문서영상과
3	1과 2인 법의감시과 신설 - 1과 신설 - 의무4급1, 연구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원부족으로 어려운 실정 ○ 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충족키 위해 인력 보강 필요 	법의학과
4	1인 마약감정인력 보강 - 연구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증하는 마약사범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마약감정인력 보강이 필요함 ○ 주5일제 근무 시행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약감정 인원의 토요일근무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수적임 	마약분석과

구분	요구내용		요구사유	과명
5	1인	문서작성시기 감정인력 보강 - 연구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의 작성시기 감정은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로서 ○ '04년부터 신규 감정업무에 착수함에 따라 감정수요 급증('04년 109종, '05년4월 135종)하여 전담인력 충원 필요 	화학분석과
6	2인	감정관련 출장 증가로 인한 운전원 보강 - 기능10급(운전원)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인 감정업무의 증가 및 다양화, 질적 향상요구에 따른 감정관련 출장 증가로 인하여 운전원 보강 필요 	서부중부 분소
7	2인	경찰직 및 분석화학실 인력 보강 - 경감1, 연구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현안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경찰인력 증원 필요 ○ 분석화학실의 증가하는 감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인력 보강 	남부분소
8	1인	식품위생 및 부정식품 감정인력 보강 - 연구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식품관련 사건, 사고에 대한 감정을 3인이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과다로 감정의 정확성 결여와 지연에 따른 수사의 부진을 초래 ○ 저급 수입 식품 증가 및 원산지 허위기재 등의 부정식품 관련사건 증가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에 따른 식품사건의 예상되는 증대에 대한 대책 수립 ○ 원산지 추적 관련 연구 개발 시스템구축 	약독물과
9	1인	거짓말탐지검사 감정인력 보강 - 별정6급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적 증거가 없는 형사사건 및 교통사고의 경우 피의자·고소인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수요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 실체적 진실 규명에 보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첨단화된 감정 장비와 검사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 	범죄심리과
10	1인	유전자분석인력 보강 - 연구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NA범죄해결 시스템 구축 필요 - 폭증하는 유전자감식요구에 탄력적 대응, 미해결사건 DNA자료전산화로 통합 서비스제공 체계 구축 - DNA활용미아찾기사업 등 공익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인원보강 - 첨단유전자감정기술의 다양한 적용추진 	유전자분석과
11	1인	안전사고 감정인력 보강 - 연구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사고의 복잡다양화로 현원(공업연구관(5급,물리)1, 공업연구사(6급,물리)2명으로는 정확하고 신속한 감정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전기, 기계 등 전문분야 전공자와의 팀 구성 없이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성결여로 신뢰도가 약화되고 있음 ○ 대구지하철화재 등 대형안전사고 감정에 대비한 연구절실 	물리분석과

심재덕 의원님

(국과수 소장 이원태)

현재 확보된 예산은 감식처리건수 예상치에 비해 얼마정도 부족한 형편인가?

- 유전자감정 1건당 총 소요비용은 약 5만원(49,749원)으로 05년도 예상되는 유전자감정 건수는 약 3만 건 정도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예산액은 12억으로 추정되나 '05년 확보예산은 8억으로 약4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심재덕 의원님

(국과수 소장 이원태)

금년도 확보된 유전자시약 재료비와 재고량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 '05년도 유전자관련 시약재료비는 8억원이며 현재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소 예정인 동부분소 시약재료비 중 유전자 해당분 4천6백만원을 추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청에서 시약재료의 직접수급 지원을 받게 되면 11월 말까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심재덕 의원님

(국과수 소장 이원태)

이렇게 된다면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국과수에서는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 만약 시약재료 확보가 안될 경우, 부득이 긴급 감정 위주로 운영해야 하므로, 다수의 감정지연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자부와 협의, 추가예산을 확보 또는 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덕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행자부나 경찰청에서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을 원하는데,
이관되지 않은 이유는?

- 법무부 등 일부부처가 감정수행의 독립성과 감정결과
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하를 이유로 한 반대이견으로
행자부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심재덕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감정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 감정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기 위한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KOLAS)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요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는 부장, 과장, 해당담당으로 구성된 심사합의제에서 전원일치에 의한 완전협의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참고

- DNA 및 마약분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04. 8.27)
- 현재, 혈중알콜 및 약독물 분야 감정인증사업 추진중

심재덕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국과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 및
신뢰도 제고 방안은?

-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KOLAS), 감정기법의 표준화, 장비의 현대화, 감정인의 자질 향상을 통해 최고의 감정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심재덕 의원님

(법의학과장 최영식)

민간인 위탁도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국과수에 의뢰되는 부검 및 감정물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국과수와 타 기관 또는 대학, 민간연구소 등에 재의뢰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과수에서는 신속 정확하게 신뢰성있는 감정결과를 회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감정결과를 신뢰하여 채택하는지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 재 덕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청구 같은 제도를 두는 것에 대한 생각은?

- 국과수의 전 직원은 감정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기 위한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KOLAS)'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요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는 부장, 과장, 해당담당으로 구성된 심사합의제에 회부하도록 하고, 심사합의제는 전원일치에 의한 완전협의제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2차 감정 혹은 재감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

- DNA 및 마약분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04. 8.27)
- 현재, 혈중알콜 및 약독물 분야 감정인증사업 추진중

심재덕 의원님

(문서영상과장 김동욱)

○과거, 허위감정 등으로 신뢰를 주지 못했는데 재
발가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
나?

○현재, 감정의 객관성 담보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 합의심의제를 운영하여 문서감정실 전 직원의 의견 통
일로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첨단 과학장비 보
강과 국제 학술회 등을 통한 연구발표 및 선진감정 기
법 등을 도입,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감정결과를 도출
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다 객관적인 감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 감정 분
석 장비를 이용하는 감정과 합의심의제도를 병행함은
물론 선진감정기관 등으로부터 감정기법에 대한 학술
연구를 토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오고 있습니다.

양 형 일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율성 및 성과관리가
필요함. 국과수의 성과관리 방향은?

- 우리 연구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타 책임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우수 운영사례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부여되면 성과관리 등 책임운영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참고 : 책임운영기관(총 44개 기관)

- 현 재 : 23개 기관
- 신규지정 : 44개 기관
- 제외예정 : 5개 기관

양 형 일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대검 과학수사 제1담당관실의 업무 및 장비 중복 문제와 관련하여, 조정을 위한 양기관간 회의를 가진 적이 있는지?

- 업무 및 장비 중복문제와 관련하여 회의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국과수의 기능이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일부 유사한 경우도 있으나, 기관마다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 참고

- 검찰에서 수행하는 유전자, 마약, 문서 등의 감정은 자체적인 인지수사를 위한 것임.
-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경우는 군범죄 고유사건·사고의 과학적 증거 감정을 전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군범죄 수사감정을 보안적 측면을 고려,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경찰청 과수과의 경우는 국과수의 기능에 없는 지문·족흔적 및 전과기록 관리 등을 하고 있어, 중복되는 기능은 없음.

양 형 일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정부내 유사기관들과의 협조체제 구축과 연구 및 인력교류가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 습득을 위해 필요함. 이에 대한 의견은?

-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유사기관들과의 협조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 제 항 의원님

(총무과장 이창균)

법무부의 경찰청 이관 반대에 대한 의견 및 경찰청 의견인 책임운영기관화 및 과학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소장의 의견은?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범죄수사와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정의 독립성과 신뢰성,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구소는 내년부터 책임운영기관 전환을 위해 법률 개정 중에 있으며, 책임운영기관과 및 과학수사위원회 설치에 감정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 제 항 의원님

(법의학과장 최영식)

-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을 통해 1차 감정을 하도록 하는 등 공조 가능성 및 경찰공의나 공중보건의를 위해 소정의 법의학 교육을 이수 후 검시인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의견은?
- 법의학교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국과수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노하우를 공유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전담검시관 제도 도입 관련 질의

- 기본적으로 검안과 부검은 전문성을 갖춘 동일한 사람 및 국가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즉, 검시 체계를 검안과 부검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업무의 능률은 물론 정확성에 큰 장애를 초래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검시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문가로 하여금 일련의 검시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

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검안 따로 부검 따로의 비효율적 검시제도는 부적절한 현 검시제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의 수가 부족하다고 하여 법과대학의 교수들에게 검사의 역할을 맡긴다고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검시는 국가에서 담당해야 하므로 기존 국과수의 범의 검시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범의학 전문가를 수련 및 배출 시킬 수 있는 여건(처우개선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재 국과수에서 실시하고 있는 촉탁의 제도와 같은 형태로 부검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고유 업무인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실무기관을 지원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하여 상호 발전적인 역할을 기대 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 변사체에 대하여 국가가 검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제도 및 그 제도를 운용할 인원 및 조직이 있어야 되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합니다. 변사

체의 사인규명 및 사망의 종류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의 지휘를 받음으로 인하여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의 변사체 발생보고 및 검사의 변사체 처리 지휘에 의거하여 주어진 조건하에서 수동적인 부검업무에 국한하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변사체에 대한 부검결정권이 없으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 부재가 크나 큰 문제점입니다.

해결 방향으로는 검시조사와 부검의 통합적 운영, 전문가 양성, 신속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법의관을 두고 법의관 사무소(가칭)를 설치 운영하게 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임명 또는 민선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 직속 하에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의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검시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는 법의학자를 배양할 토양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단기간 법의학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충분하면서 확실한 처우 개선

이 이루어질 때만 검시관 양성 및 검시관 제도의 도입
문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 제 항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면수)

우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주도로 유전자 정보 은행을 설치하여, 앞서 밝힌 5대 범죄 관련 구속된 자에 한해 상피세포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타 부처의 유전자감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국과수의 의견은 무엇인가?

○ 국과수와 검찰 및 경찰은 상호 협력 하에, 법률로 정한 특정범죄에 대해 국과수는 현장 증거물과 구속된 자(피의자)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를 구축하고, 검찰은 수형인의 유전자감식정보를 구축 관리 및 보관하는 법률안을 '04년 공동 입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법률로 정한 특정범죄

가. 형법 제13장(방화와 실화의 죄)중 방화의 죄(제164조 내지 제167조 소정의 각 죄 및 동 미수, 예비·음모죄)

나. 형법 제24장(살인의 죄)의 각 죄

다.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중 제259조, 제262조 소정의 각 죄

- 라. 형법 제29장(체포와 감금의 죄)의 각 죄
- 마. 형법 제31장(약취와 유인의 죄)의 각 죄
- 바.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 제302조, 제303조 소정의 각 죄
- 사.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중 절도의 죄(제330조 내지 332조 소정의 각 죄)와 강도의 죄(제333조 내지 제341조 소정의 각 죄 및 동미수, 예비·음모죄)
-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소정의 각 죄
-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내지 9 소정의 각 죄
- 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내지 제12조 소정의 각 죄
- 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각 죄

우 제 항 의원님

(유전자분석과장 한면수)

시민단체에서 향후 개인 DNA보호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을 경우, 국과수 위주의 유전자정보은행의 도입이 쉬울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의견은?

- 구속자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의 구축은 현장 증거물에서 얻은 유전자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따라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 법률(안)에 의하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유전자감식정보 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합리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시 숙고하여 수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